

『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
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3명

2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과태료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반 행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- 위반 횟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 차등 부과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
- ◆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안)으로 제안된 것으로,

- 검토 결과,

- ◆ 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내용과 정도를 고려한 과태료 금액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배치됨이 없음.